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7	2019	비 고
적용대상	근로자	근로자	-
보험료율 (근로자 / 사용자)	7% (3% / 4%)	7% (3% / 4%)	-
보험료 부과 상한 / 하한 소득	600,000 CFA / 없음	600,000 / 35,000 CFA	하한 소득기준 신설
노령연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180개월, 60세	가입기간 180개월, 60세	-
노령연금 지급률 (40년 기준)	45.8%	45.8%	-
일시금	가입기간 12개월 당 최종 3년 또는 5년 간 가입자 평균 소득의 1개월분 지급	가입기간 12개월 당 최종 3년 또는 5년 간 가입자 평균 소득의 1개월분 지급	조건 :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 180개월 미만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63년
- 현행법 : 2006년(사회보장)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민간부문 근로자,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근로자를 포함한 특정 공공부문 근로자, 직업학교 학생, 훈련생, 견습생
- 임의적용 : 자영자
- 적용제외 : 공무원, 군인, 보안인력

4 재원조달

- 가입자 : 총 소득의 3%
- 자영자 : 기여금
- 사용자

- 임금 지급총액의 4%
 -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며 20인 미만 사업장은 분기별로 납부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은 600,000 CFA francs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35,000 CFA francs
- 정부 : 없음. 특별제도 하에 가입되지 않는 공공부문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연금
-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60세 도달자 (조기연금은 55세)
 - 근로가 중지되어야 함
 - 연금은 상호 협정에 의해서 해외 지급 가능
 - 노령수당 : 납부기간이 120개월 이상이나 180개월 미만인 60세 도달자에게 지급하며 근로가 중지되어야 함
 - 조기연금 :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55세 도달자
- 장애연금
-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국가 사회보장기금에 5년 이상 등록된 자로 소득활동능력이 66.7% 이상 상실된 것으로 판정되고 장애 발생 직전 연도에 6개월 이상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
 - ※ 업무 이외의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등록 및 보험료 납부요건이 면제됨
 - 상시간호수당 :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시 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
- 유족연금
- 사망자가 노령연금, 노령수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경우 지급
 - 수급 가능한 유족
 - 55세 이상 배우자(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학생 또는 장애인인 자녀는 21세), 장애인인 배우자, 임신 중인 배우자, 18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학생이나 장애인인 경우 21세).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 이전에 가입자와 2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있어야 함(단, 사망자의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는 배우자는 예외)
 - 재혼 시 유족연금 지급 정지
 - 유족청산금 : 사망자가 가입자였으나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경우 지급
 - 수급 가능한 유족은 55세 이상 배우자(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학생 또는 장애인인 자녀는 21세), 장애인인 배우자, 임신 중인 배우자, 18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학생이나 장애인인 경우 21세).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 이전에 가입자와 2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있어야 함(단, 사망자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는 배우자는 예외)
 - 다수의 배우자는 유족청산금을 수급할 자격이 될 수 있음

○ 노령연금

- 최종 3년 또는 5년 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둘 중 큰 금액)의 40%에 280개월부터 350개월의 보험료 납부기간 12개월 당 월 평균소득의 1%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
- 월 최소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60% (법정 월 최저임금 : 35,000 CFA)
- 월 최대연금액은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80%
- 조기연금 : 정상퇴직연령 이전에 연금을 청구한 시점부터 정상퇴직연령까지의 기간 1년 당 5% 씩 감액
- 연금은 분기마다 지급됨
- 노령수당 : 가입기간 12개월 당 최종 3년 또는 5년 간 가입자의 평균소득(둘 중 큰 금액)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장애연금

- 최종 3년 또는 5년 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둘 중 큰 금액)의 40%에 280개월부터 350개월의 납부기간 12개월 당 월 평균소득의 1%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 가입자는 청구 시점부터 정상퇴직연령까지의 기간 1년 당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음
-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장애연금은 중지되며 동일한 금액의 노령연금으로 대체됨
- 상시간호수당 : 연금액의 50%까지 지급
- 연금은 분기마다 지급됨

○ 유족연금

- 배우자연금 : 사망자가 수령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 지급. 유족배우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연금액은 균분됨
- 고아연금 : 사망자가 수령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 (완전고아인 경우 100%)가 모든 고아에게 균분 지급.
- ※ 유족연금을 총합한 최대금액은 사망자가 수령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연금은 분기마다 지급됨
- 유족청산금 : 12개월 기준 보험료 납부월수만큼 일시금으로 지급

- 노동·고용·직업훈련·사회보호부(Ministry of Labor, Employment, Professional Training, and Social Protection)
 - 전반적 감독
- 국가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

<2019년 ISSA 자료>